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10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충북도민들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형성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충청북도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충청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충청북도의 산림교육 활성화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세종('16), 경기('16), 전북('17), 강원('17)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임.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3조는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한 도지사의 산림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산림청에서 수립·시행하는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연계된 충청북도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8. 9. 21.~'18. 9.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충청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충청북도의 산림교육 활성화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